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nn9
----------	------

제출일자 : 2019. 11. 29.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자연휴양림 통합플랫폼(숲나들e) 시행에 따라 산림청 표준조례안에 의거 자연휴양림 운영 및 이용요금 처리방법 등의 관리기준을 개정하여 국민들의 자연휴양림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연휴양림 시설이용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11조)
- 나. 시설사용료·감면·반환·위약금 사항을 정비(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 다. 시설사용 및 입장 제한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0조)
- 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숲속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폐지(안 부칙 제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 (※ 붙임)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2) 입법예고(2019. 10. 15. ~ 11. 4.)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비슬산자연휴양림과 화원자연휴양림으로 한다.

② 비슬산자연휴양림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일연선사길 99 일원으로 하고, 화원자연휴양림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화원휴양림길 126 일원으로 한다.

제3조(시설의 범위) ① 화원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
2. 산림휴양문화관
3. 그 밖의 시설

② 비슬산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콘도, 통나무집)
2. 숲속캠핑장

3. 청소년수련관
4. 세미나실
5. 그 밖의 시설

제4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이용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공단 홈페이지”라 한다) 또는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5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2월까지는 9시부터 17시로 한다.

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 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 사용 첫날의 15시부터 오후 22시 사이
2. 퇴실시간 : 마지막 사용일의 12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으며 입·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시설사용료)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복지바우처,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감면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달성군이 주관하는 직원 직무교육 및 행사 등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약 또는 입실 시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약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입장이 제한되거나 퇴장되는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제1호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시설사용 및 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시설사용 및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흙·돌을 채취하는 사람
7. 휴양림 내 지정된 장소 외에서 불을 사용하는 사람
8.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제11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나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을 통하여 군수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손해배상) 자연휴양림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연휴양림의 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 원상회복이나 실비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 등에게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하는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13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운영·관리사무의 목적물인 자연휴양림 시설(이하 본조에서 “시설”이라한다)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모든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과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물품·비용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위·수탁계약 직후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 및 손실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에 대해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 없이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 대여나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다.

제15조(수입금의 처리) 자연휴양림의 운영 수입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숲속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시 설 사 용 료(제6조제1항 관련)

1. 용어의 뜻

- 가. “성수기”란 1년 중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나.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은 제외)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 다. “주중”이란 주말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 라. “비수기”란 1년 중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 마. “단체”란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자연휴양림 시설을 이용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20명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일정한 조직체를 말한다.
- 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사. “달성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아.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 자.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 차. “협약 체결 기관·단체”란 자연휴양림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달성군(수탁기관 포함)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를 말한다.

2. 비슬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			사용기준	사 용 료(원)		기준인원	비 고
				성수기(주중, 주말 불문) 및 주말	비수기의 주중		
숲속의집	콘도(1,2)	A형(30㎡)	1박	90,000	60,000	5인	
		B형(60㎡)	1박	160,000	110,000	10인	
	통나무집	A형(29㎡)	1박	90,000	60,000	5인	
		B형(67㎡)	1박	180,000	120,000	11인	
청소년수련관		A형(21㎡)	1박	70,000	50,000	4인	
		B형(96㎡)	1박	200,000	140,000	19인	
세미나실		196㎡	4시간	200,000	150,000	120인	

3. 비슬산자연휴양림 숲속캠핑장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원)			기준인원	비고
				성수기(주중, 주말 불문)	비수기			
					주중	주말		
카라반	두루미		1박	100,000	60,000	80,000	4인	
	이팝나무		1박	120,000	80,000	100,000	6인	
	참꽃		1박	140,000	100,000	120,000	10인	
캠핑데크	소	7x4	1조/1박	30,000	15,000	20,000		
	대	8x5		40,000	20,000	30,000		
기타	비누, 수건 등 세면도구와 휴대용가스버너, 고기불판은 시설 이용자가 준비해야 한다. (단, 숯불사용금지)							

4. 화원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			사용기준	사 용 료(원)		기준인원	비 고
				성수기(주중, 주말 불문) 및 주말	비수기의 주중		
숲속의집	숲속의 집	A형(50㎡)	1박	140,000	100,000	9인	
		B형(68㎡)	1박	180,000	130,000	12인	
산림문화 휴양관	휴양관	A형(29㎡)	1박	90,000	60,000	5인	
		B형(101㎡)	1박	240,000	170,000	19인	-

[별표 2]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분	감면대상	기준	감면요율	비 고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청소년수련관 숲속캠핑장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요금의 50% 할인	※비수기의 주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요금의 30% 할인	
	국가보훈대상자	1~3급	요금의 50% 할인	
		4~7급	요금의 30% 할인	
	다자녀가정		요금의 30% 할인	
	달성군민		요금의 30% 할인	※성수기(주중, 주말 불문) 및 주말
			요금의 10% 할인	
세미나실	단체로 시설을 이용하는 자		요금의 20% 할인	

1. 감면 적용 예약은 감면대상자의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게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 등을 말한다)가 자신의 명의로써 할 수 있다.
2. 감면대상자는 시설 이용 전에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감면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1호 후단의 경우 예약한 보호자가 동행하여 감면에 필요한 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3. 시설사용료 감면은 1인 1일당 1시설(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세미나실 1일당 1회 포함)에 한한다.
4. 사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하지 않으며,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5. 위 감면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협약 체결 기관·단체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 내용에 따른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등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